

키친인큐베이터 식품제조 푸드메이커 9기 모집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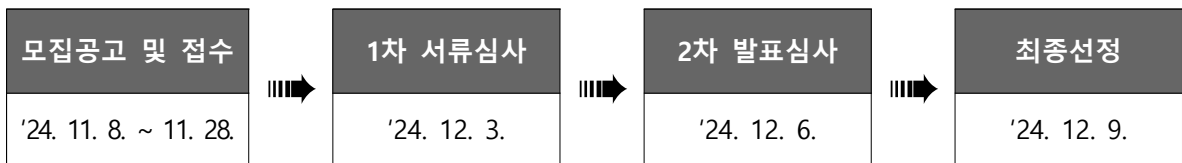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는 식품제조 스타트업 대상 간편식품 등을 제조 및 B2B 유통 및 B2C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주방을 사용할 푸드메이커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1월 8일
(재)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1

주요내용

- ❑ 사업명: 키친인큐베이터 식품제조 푸드메이커 9기 모집
- ❑ 모집기간: 2024. 11. 8.(금) ~ 11. 28.(목) 13:00
- ❑ 모집대상: 서울시 소재 7년 미만 식품제조 (예비)스타트업
- ❑ 모집규모: 8개사
- ❑ 신청방법: 스타트업플러스(<https://www.startup-plus.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선정방법: 신청자격검토 → 1차 서류심사(2배수 내외) → 최종 발표심사 → 최종선정
- ❑ 결과발표: 2024. 12. 9.(월) 예정
- ❑ 지원사항
 - (시)제품 생산 공간 및 설비 사용 지원(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가능, 단, HACCP 적용 불가)
 - 제품 사진촬영 및 식품표시사항 등 1:1 멘토링·교육 지원
 - 제조시설 인허가 컨설팅 지원
 - 브랜드 디자인 및 제품 R&D 지원
 - 생산 제품의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입점 연계 지원 등
-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 위치 및 제조주방



□ 모집대상: 서울시 소재 7년 미만 식품제조 스타트업

※ 기존 식품제조 푸드메이커로 선정된 팀(기업)은 모집대상에 제외되며, 졸업기업 추가모집에 응할 수 있음

<신청제외대상>

-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가능
- ③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④ 모집공고일 기준 키친인큐베이터 졸업기업 혹은 타기관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활동 중인 기업
- ⑤ 대표자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자
- ⑥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기업
- ⑦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인 기업
- ⑧ 신청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제출 서류를 허위기재·누락한 기업
- ⑨ 사기, 횡령, 고소 등 민사·형사상의 수사 진행 및 사업수행 또는 기업운영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선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⑩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 ⑪ 신청제품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등 저작권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업
- ⑫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모집기간: 2024. 11. 8.(금) ~ 11. 28.(목) 13:00

□ 모집규모: 8개사

□ 신청방법: 키친인큐베이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s://hubkitchen.startup-plus.kr/>) 접속 및 회원가입

○ 창업서비스 → 액셀러레이팅 → 식품제조 푸드메이커 9기 → 접수하기 클릭 → 신청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식품제조 푸드메이커 지원 신청서류

내용	필수 제출 여부
· 식품제조 푸드메이커 지원 신청서	필수
· 제조주방 발표자료	필수
· 유의사항 확인서	필수
· 투어프로그램 참가 확인서	선택

※ 제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한 마감 후 자료의 수정 또는 추가접수 불가.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대상 제외**

※ 첨부파일의 용량이 10MB를 초과할 경우, 접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모집기간 내 신청링크를 통해 키친 투어프로그램 참여 시 참가확인서 발급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 지원서 내 반영 가능)

□ 지원사항

- 지원기간: 2025. 1. 1.(수) ~ 2025. 6. 30.(월)
- 지원공간: 서울창업허브 공덕 본관 키친인큐베이터 內 제조주방 시설



- 지원공간: 130.68m² (약 40평)
- 공간이용료: 무료
- 영업신고가능사항
 - 1) 식품제조·가공업 (B2B 유통·납품 가능)
 - ※ HACCP 의무분야는 시제품만 생산 가능
 -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B2C 소비자 직접판매만 가능)
 - ※ HACCP 의무분야 미적용
- 주방 이용시간: 10:00 ~ 18:00
 - ※ 월 50시간 내 하루 최대 8시간 이용가능,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 공간 사용료 무료, 시설·집기(오븐, 냉장고 등) 제공
- 활동기간 내, 영업신고 **필수**
(상세내용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 예정)

〈HACCP 의무 적용 분야 예시〉

- ① 어묵 ②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④ 빙과류, ⑤ 비가열음료, ⑥ 레토르트 식품, ⑦ 배추김치, ⑧ 즉석조리식품(순대), ⑨ 어육소시지, ⑩ 과자·캔디류·빵류·떡류 등

-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 기초역량강화 프로그램
 - F&B 관련 교육 및 멘토링
 - 제품 R&D 지원
 - 제조시설 인허가 컨설팅
-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 성장지원 프로그램
 - 상품화 브랜딩 지원, 사진촬영 홍보지원
 - 온.오프라인 마케팅출 등
 - 공장 OEM 매칭 지원
 - ※ 단, 지원프로그램은 진행조건에 부합하는 팀에 한하며, HACCP 의무적용 분야 제품은 시제품 생산만 가능, 판매용 제품 생산 불가

□ 신청 전 유의사항

- 25년 1월월 1일 이후 정상적인 활동시작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는 5월 16일 예정인 한국 식품산업협회 신규영업자 위생 교육 필수(여의도 진행예정이며, 타지역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참조)
※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교육은 조기마감이 예상되기에, 5월 초 가급적 빠르게 신청 권장
- 제조주방 영업신고 허가 매뉴얼은 <붙임. 허가 신고 절차(공유주방 및 제조주방)> 참조

3

심사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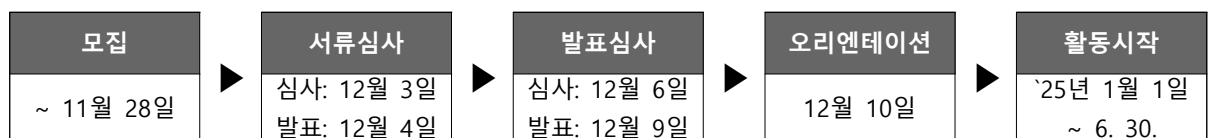
□ 선정기준

- 선정절차: 요건검토 → 1차(서류)심사(2배수 내외 선발) → 최종(발표)심사 → 최종선정
※ 서류평가 대상자가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심사 생략 후 대면심사 진행 가능
- 평가방법: F&B 전문가 5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적용
- **발표평가: 총 10분(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선정기준: 심사 결과 최저·최고점 제외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 심사일정: **(1차서류심사)** 2024. 12. 3.(화) 예정, **(1차결과발표)** 2024. 12. 4.(수) 예정
(최종발표심사) 2024. 12. 6.(금) 예정, **(최종결과발표)** 2024. 12. 9.(월) 예정
※ 운영상황에 따라 진행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발표평가 시, 대표 또는 총괄책임자 발표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서울창업허브 승인 하에 기업 내 직원이 발표 가능

□ 평가기준

유형	심사위원	선정기준	선발배수	평가항목 및 배점		
1차(서류)심사	심사위원 5인	최저 · 최고점 제외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2배수	구분	배점	평가항목
				기본평가	40	전문성, 창업 동기
				아이템	20	아이템 차별성, 완성도
2차(대류)심사			1배수 내외	사업성	40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구분	배점	평가항목
				기본평가	20	전문성, 창업 동기
	아이템	30		아이템 차별성, 완성도		
사업성	50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 추진절차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참고사항

- 공간사용료는 별도 없으며, 식재료 등 소모품은 본인 부담
- 기초역량강화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푸드메이커가 지원 가능하나, 일부 지원사항의 경우 진행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
- 식품제조 푸드메이커 9기의 활동기간은 6개월이며, 졸업 후에도 후속지원 차원으로 졸업기업 모집을 통해 연장이용 가능할 수 있음
- **졸업기업 모집 시, 평가요소**는 제조주방 이용시간(40점), 월성과보고(20점), 사업참여도(20점), 위생관리·안전관리 교육 수료(20점)이며, 상황에 따라 평가 요소는 변동 가능함

- 식품제조 푸드메이커로 선발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혹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는 필수이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신고시 B2B 납품이 가능하나, HACCP 의무 적용 분야 제품 생산 시, 시제품 생산만 가능함
- 식품제조 푸드메이커로 선정될 경우, 원활한 사업 운영, 성과 추적 및 지속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 매월 매출 등 월 성과보고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 제조주방은 매주 예약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한 번에 하나의 기업만 이용이 가능하기에 예약 신청이 늦을 경우, 제조주방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유의사항

- **공유주방·개별주방과 동시에 사용 불가하므로, 중복 합격의 경우, 택 1 필수**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마감시한까지 신청서류가 업로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처리되지 않으며 일체 서류 반환하지 않음
※ 마감 당일 접수 지연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이므로, **마감일 이전 제출 완료 요망**
- 본 공고에서 인정하는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은 접수에 대해서는 신청을 인정하지 않음
-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허위 사실 또는 제한사유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 기타 선정을 바탕으로 수혜받은 모든 지원사업 환수, 향후 5년간 동일사업 참여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대표자 및 담당자 연락처로 진행여부가 전달되오니, 이메일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요망
- 심사기준 미달 시 모집예정 규모에 관계없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지원 요건 불충족 사항이나 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기타 선정을 바탕으로 수혜받은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선정 이후 5년간 본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자료요청에 협조해야 함
- 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SBA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

5

투어 프로그램

□ 키친인큐베이터 투어프로그램 링크: <https://forms.gle/j4Dsoaoq3quhrrZf8>

□ 구성

- 키친인큐베이터 공간 소개 - 지원프로그램 안내 - Q&A
- 예상 소요시간: 30분

날짜	시간(타임별 약 30분 소요)	
	오전 10시	오후 3시(15시)
11월 5일(금)	X	가능
11월 7일(목)	가능	X
11월 11일(목)	가능	가능
11월 13일(월)	가능	가능
11월 18일(월)	가능	X
11월 25일(월)	X	가능

□ 투어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 제출시 **서류심사 가점 2점 부여**

6

문 의 처

- ❑ 키친인큐베이터 운영사무국: 02-2115-2008
- ❑ 서울경제진흥원 창업허브1팀 사업담당
 - 전화번호: 02-2115-2033
 - 이 메 일: rodwell@sba.seoul.kr

